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의무적
반영 〉

■ 이낙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897호)

2021.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의무적 반영(안 제6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낙연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1. 8. 4.

다. 회 부 일 : 2021.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조달절차에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의무적 반영(안 제6조)

현행	개정안
○ 사회적 책임 장려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 사회적 책임 장려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함.

현행 조달절차에서는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달청의 ‘사회적 책임 장려’ 조문은 조달청이 그동안 친환경 녹색인증업체 및 신규고용·채용 우수기업을 조달절차에서 우대하고,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업체 신인도 평가항목에 사회적 책임조달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사회적 책임조달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015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16년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서 민간기업에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

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조달절차에서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현재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정책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라 하겠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현재 일부 조달절차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물품 구매, 공사 계약 등 모든 조달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조달업체가 선정되어 조달을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정합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든 조달절차에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환경적 가치경영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조달절차에서 반영해야할 사회적·환경적 가치로 예를 들고 있는 요소들은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열거된 요소들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조달절차에 열거된 요소들을 전부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부 요소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기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회적·환경적 가치요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 ----- ----- -----반영하여야 한다.

문의처

02)6788-5152

참 고

조달청의 사회적 책임조달 추진 현황

□ 친환경 녹색인증업체 및 신규고용 채용 우수기업 우대

○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

- 우수재활용, 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체 및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가점(0.7점)

○ 전년대비 고용 증가율이 기업규모별 증가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 차등 가점(3.0~1.0점)

* 예) 고용증가율이 대기업 6%, 중기업 7%, 소기업 10% 이상이면 +3.0 가점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 공공기관 의무 구매비율 준수,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 사회적 기업 우대구매* 제도 운영

* 물품구매 적격심사 평가(1.7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5점),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 선정(3점)

○ 최근에는 창업초기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 적격심사 및 MAS 2단계경쟁 시 창업초기기업, 여성고용 우수 기업 등을 우대*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용몰 확대 운영**

* 적격심사 시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 확대(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0.7→1.0점), 여성고용 우수기업(최대 1→1.5점), 여성기업(최대 0.5→1점) 등 가점 확대

** 기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초기기업 전용몰 추가

<사회적 기업>

○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12계층

** 보육, 예술·관광, 산림보전,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청소 등

○ 인증 현황 : 2021.12월 현재 3,064여개

○ 공급실적 : ('12)300개사(124억원)→ ('13)461개사(351억원)→ ('14) 596개사(768억원)